

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 형성과정 연구 -위원회 구성과 목록 변화를 중심으로-

오춘영

국립중앙박물관

Corresponding Author : adagio@korea.kr

국문초록

일제는 그들의 통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고,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을 문화재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나마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목록화한 문화재는 목록화 계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1909~1916)은 등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1917~1933)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1934~1945)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1934년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주제어 조선총독부, 문화재, 위원회, 세키노타다시, 구로이타가쓰미

투고일자 2017. 12. 27 • 심사일자 2018. 01. 19 • 게재확정일자 2018. 02. 20



I. 머리말

문화재는 현재에 남겨진 과거의 유산(遺産)이다. 그 범위는 유형과 무형, 인공물과 자연물에 걸쳐 넓으며, 그 하한 연대도 현재와 가까워지는 추세이다.¹ 그러나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모든 것이 문화재가 될 수는 없다. 문화재는 가치(價値)가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치를 기준으로 선별이 된다. 이때의 가치는 문화재를 규정하는 집단의 가치이며, 이 집단은 흔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政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선정할 때에는 당시 정부의 가치(또는 이데올로기)가 그 과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 문화재 중 특히 중요한 것을 가려 정부에서 공인하고 관리를 한다.²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공인(公認 : 국가지정·국가등록·지방지정문화재)한 13,040건의 문화재가 있다.³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당연히 우리민족의 역사를 증명해준다. 자랑스러운 역사이건, 그렇지 않은 역사이건 간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 정부에서 공인한 문화재로서 현재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공인 문화재의 출발점은 불행히도 우리민족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우리의 문화재는 설계(조사 및 법제화)되었고, 공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⁴ 다분히 민족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할 문화재의 기본 체계가 비우호적 타자(他者)의 의지에 따라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남기고 있다. '문화재(文化財)'라는 명칭부터 법의 기본적 체계와 분류와 그 내용 등 상당한 부분에서 타자에 의해 시작된 체계가 현재까지 답습되고 있는 면이 있다.⁵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출발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모순된 체계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내용들로 시작되었는지 파악한 후에야 그 대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문화재 체계 문제의 출발점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에 제도화되어 구성된 문화재의 목록 변화와 이를 심의했던 위원회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안에 내재된 지배권력(조선총독부)의 문화재에 대한 시각의 일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제의 문화재 정책에 관해서는 역사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역사적 측면의 연구는 이성시, 최석영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성시는 한반도에 대한 문화재 행정의 기본 체계가 일본 근대 역사학의 거두인 구로이타가쓰미(黑板勝美·1874~1946)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밝혔다.⁶ 구로이타는 1908~1910년 구미유학 후 1912년 『사학잡지(史學雜誌)』에 「사적·유물에 관한의견서」를 게재하여 사적·유물(문화재)에 관한 정의, 분류, 보존법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한국과

1 문화재 지정 초기에는 역사시대 이전의 것들만 그 범주에 포함되었으나, 현재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근현대의 유산들도 문화재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영미권에서는 문화재의 범주를 설정하는 포괄주의,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정주의가 있다고 인식된 면이 있으나, 영국과 미국에서도 특별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도 문화재의 범주를 폭넓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문화재 제도가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범주를 정하고 특별한 것을 지정하는 체계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각국의 문화재 제도를 비교연구한 「한국행정학회발표논문집(2008)」 참조.

3 지정문화재총괄(표)(<http://www.cha.go.kr>, 문화재청)행정정보)통계정보)총괄현황, 2017.12.27).

4 최근 발표된 다음의 두 연구가 참고 된다.

김지선, 2008, 『조선총독부 문화재정책의 변화와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현일·이명희, 2014,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과 지정」, 『미술자료』 85, 국립중앙박물관.

5 1990년대 중반 김영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에 의해 일제잔재 청산 사업이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이 연장선에서 문화재보호법의 태생적 문제가 본적 제기되어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문화재관리국, 1996.12,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수원시, 1997.9, 「문화유산대토론회」) 그러나, 이 문제제기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법의 근본적인 체계 변화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6 이성시, 2016, 「구로이타가쓰미(黑板勝美)의 역사학 연구와 식민주의」,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함께.

일본의 문화재 체계의 시작점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석영은 일본 본토에서 먼저 형성된 고고학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식민지인 조선에서 정책적으로 시험되고 그들의 의도에 맞게 재단되었음을 고고학 자료와 박물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밝혔다.⁷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의 연구는 오세탁, 김지선, 이순자, 이현일·이명희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오세탁은 근대시기 독일에서 일본 - 조선으로 이어지는 법제적 역사 측면에서 일본의 침략적 행태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관련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⁸ 김지선은 조선총독부 문화재 정책의 변화와 특성에 대해 당시 지배 과정에서 제정된 두 개의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조사 및 정책수립 시기'와 '이데올로기 창출을 위한 보존정책시기'로 나누어 상세한 근거자료를 인용하며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 연구하였다.⁹ 이순자는 대한제국 시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일제의 고적조사 사업을 중심으로 일제의 침략적 문화재 정책을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밝혀내었다.¹⁰ 이현일·이명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일제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행정적 체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¹¹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종합하면, 일제는 그들의 식민지 통치와 합리화라는 필요에 의해 한반도의 문화재를 조사하였고, 전시와 교육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결과를 통치정책에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총괄적·거시적 측면에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개별적·미시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부분의 보완을 위한 연구이다. 당시 진행되었던 정책 결과물의 일부를 끄집어내어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거시적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

행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구성'과 '목록 변화'를 선택하였다. '위원회'는 조선총독부가 문화재 정책을 펼치면서 관련 법규의 시행과 함께 또 다른 법규로 둔 공식적 조직이며, 문화재 행정행위의 정책적·전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다시 말하면 '위원회'는 문화재 정책의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목록'은 일제가 한반도의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정책적 시각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한반도의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문화재들이 공식 목록에 포함이 되거나 동시에 제외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이 목록은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완성되어 갔으며, 이 목록과 목록의 분류 기준이 현재 우리나라 지정문화재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글은 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의 일면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그 구성요소였던 문화재정책의 '방향'과 '결과물'에 관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II. 일제의 문화재 정책과 위원회 구성

1. 일제의 문화재 정책 시기구분

20세기 전반기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문화재 정책은 그 정책의 주요 실행 내용들을 기준으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선 시기는 조사정책의 시기이고, 다음의 시기는 보호정책의 시기이다.¹²

7 최석영, 2015, 『일제의 조선 「식민지 고고학」과 식민지 이후』, 서강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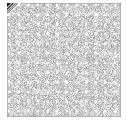
8 오세탁, 1982, 『문화재보호법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9 김지선, 2008, 앞의 책.

10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景仁文化社.

11 이현일·이명희, 2014, 앞의 글.

12 이 시기구분과 내용은 김지선의 연구(김지선, 2008, 앞의 책)에서 유의미하게 분석 및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참고하였다.



조사정책의 시기는 강점 이전인 1901년 세키노타다시(關野貞)의 개인적 조사부터 시작하여 1933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제정된 이후 1934년 중요 문화재들에 대한 ‘지정(指定)’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문화재 조사는 일제의 점령 대상지에 대한 건축물들을 조사하여 식민 통치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과 식민주의사관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의 확보라는 목적 등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기의 문화재 조사는 고건축 전공학자나 역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문화재 조사 학자로는 세키노타다시(關野貞), 이마니시류(今西龍), 구로이타가쓰미(黑板勝美), 도리이류조(鳥居龍藏) 등이 있다.¹³ 이들의 조사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의 조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에 의해 진행된 조사였다. 일제 강점 시작 이후에는 형식적으로도 한반도의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강점이 시작된 이후의 문화재 조사는 ‘조선고적조사사업(朝鮮古蹟調査事業)’으로 대표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점이 시작된 이후의 조사는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 조사는 강점 이전부터 한반도의 문화재 조사에 관여하였던 학자들이 상당수 다시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고적조사사업은 그들의 통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고 실행되었다. 전국의 문화재가 조사 대상이었지만, 타율적 역사관, 임나일본부설 등 식민주의 역사관을 증명할 수 있는 대상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조사가 된 지역은 위낙 유적이 많았던 경주 지역 외에도 낙랑 유적이 많은 평양 지역이나 백제 유적이 많은 부여 지역에도 조사가 집중이 되었다.

보호정책의 시기는 일제가 한반도의 주요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완료한 이후, 1933년 ‘보존령’을 제정하고 1934년 중요 문화재들에 대한 ‘지정’을 하기 시작하여 1945년 패망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일제가 형식적이나마 보호정책을 표방한 시기이다. 이 지정 정책은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를 중심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다. 1934년 최초의 문화재 지정 이후 해방 전까지 총 7회에 걸쳐 보존회 총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중요 문화재에 대한 지정과 해제, 수리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를 통해 드러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⁴

표 1. 1~7회 보존회 총회 표

회차	年月日	寶物	古蹟	名勝	天記	合計	(비고)
1	昭和9 (1934). 5. 1.	184	21	0	16	221	鶴鶴山城一回指定
2	昭和10 (1935). 9. 23.	65	46	3	44	158	
3	昭和12 (1937). 6. 9.	27	20	2	27	76	鶴鶴山城追加指定
4	昭和13 (1938). 11. 25.	39	31	0	32	102	鶴鶴山城指定地域一部解除否決
5	昭和14 (1939). 11. 17.	42	11	0	21	74	扶餘扶蘇山城指定地域一部解除通過
6	昭和16 (1941). 10. 2.	26	17	2	13	58	
7	昭和18 (1943). 9. 27.	19	1	0	16	36	

13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축락(囑託)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한국역사연구회, 2008, p.243.

14 <http://modern-history.museum.go.kr>(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휴류산성 관계 > 제7회 보존회 회의순서 등 > 보존회 총회. 2017.10.31. 1943년 9월에 개최된 보존회총회 관련 문서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이 회의는 전쟁물자 동원을 위해 광물 매장지인 휴류산성의 지정해제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결국엔 지정 해제되어 유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2. 문화재 관련 위원회 구성과 변화

한반도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목록화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주도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기관 내에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 지식인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기관 바깥의 학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진행하게 하였다. 관(官) 외(外)의 전문가 그룹의 전문지식 제공과 관(官)의 실행이라는 이원적 체계는 강점 초기부터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고적조사를 주로 하였던 조사정책의 시기에는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함께 조선총독부가 「고적조사위원회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29호)을 두어 고적 조사의 계획과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토록 하였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고적조사는 다분히 조선총독부 통치 정책의 영향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관의 협력 체계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 제정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보존령의 제정과 함께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관제」(칙령 제224호)를 제정하여 운영한 것을 통하여 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 역시 이전의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의 체제를 거의 따랐는데, 위원장이 정무총감인 것과 간사가 총독부 고등관인 것은 그대로이며, 나머지 사항들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표 2. 「고적조사위원회규정」과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관제」 비교 표

규정 명칭	고적조사위원회규정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관제
시행	1916년 7월 (총독훈령 제29호)	1933년 8월 (칙령 제224호)
위원장	정무총감	정무총감
간사	조선총독부 고등관	조선총독부 고등관
서기	-	조선총독부 판임관
위원	총독부고등관 또는 학식경험 있는자 중 촉탁	-
위원 수	약간 명	40인 내외
하위 규정	없음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의사규칙(1933.12. 총독훈령 제4호)

다음으로 ‘고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이하 보존회)’의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이 두 위원회(보존회)의 명단은 『일제강점기고적조사연구』¹⁵⁾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의 현황을 재구성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고적조사위원회(위원회)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보존회) 위원구성 현황

구분	관료 (조선인)	증추원함 의 (조선인)	학자 (조선인)	비고	
위원회	1916	15	3(3)	7	
	1917	13	3(3)	6	
	1923	10(1)	2(2)	11	
	1925	11(1)	3(3)	9	
	1926	13(2)	3(3)	8	
	1927	12(2)	3(3)	11	
	1928	8(1)	2(2)	12	
	1929	14(2)	2(2)	12	
	1930	11(1)	1(1)	12	
	1931	11(1)	1(1)	11	
	1932	10(2)	2(1)	11	
	보존회	1934	13(1)	1(1)	20(3)
1935		12(1)	1(1)	20(2)	
1936		11(1)	2(2)	18(1)	
1937		17(1)	2(2)	19(2)	
1938		11(1)	1(1)	18(1)	
1939		13(2)	0	22(4)	

앞의 표를 기준으로 위원회 위원 수의 연도별 변화 과정을 도표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15 '고적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이 책의 93쪽에,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위원 명단'은 236쪽에 각 연도마다 선임된 위원의 이름과 직책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이순자, 2009,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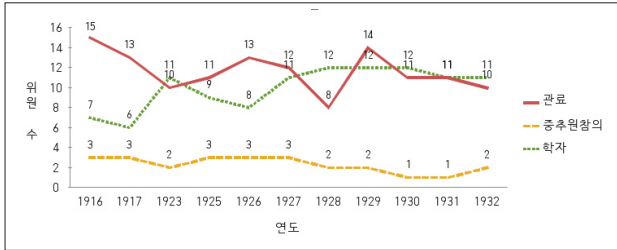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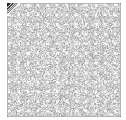


도표 1.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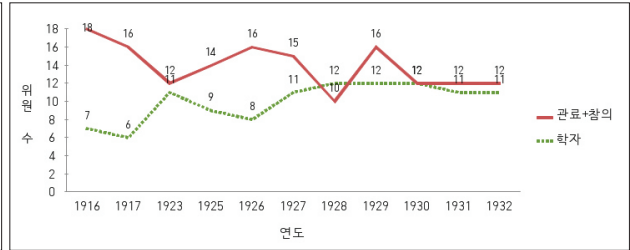


도표 2.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화 2.

위의 <도표 1>을 보면, ‘위원회’는 관료와 학자의 구성이 1916년 관료의 수적 우세 속에서 출발하여 관료 : 학자 비율이 점차 1:1로 변화된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지배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중추원참의(中樞院參議)¹⁶를 관료집단에 포함하여 보면<도표 2> 전반적으로 관료집단의 인원수가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구성 인원에서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권력의 비중을 크게 뒀으로써 의사 결정이 조선총독부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추원참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20년대 후반기부터 참정권(參政權)·자치권(自治權) 문제를 거론한 인사들이 중추원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¹⁷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이견(異見)을 보이는 인사를 굳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존회’의 경우에도 앞선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인원 구성만 놓고 보면, 중추원참의를 포함하더라도 학자집단이 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존회는 출발 당시부터 학자들의 전공분야를 구분하여 1,2부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1부는 ‘보물 및 고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였으며, 2부는 ‘명승 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였다.¹⁸ 따라서 학자들을 각 부로 나누면 회의 시 관료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관료들은 2개의 부에 동일하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1938년 8월 당시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 현상이 드러난다.¹⁹

표 4. 1937년 8월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위원구성 현황(자료1. 참조)

구분	1부 위원 수	2부 위원 수
관료	11	11(1부 겸임)
중추원참의	1	0
교수	7	4
위원	7	2

1부와 2부에는 당연직 관료 위원으로 당시 조선총독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겸직으로 대거 참여하였다. 이전 ‘위원회’의 당연직 관료가 과장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존회의 당연직 관료를 국장급으로 한 것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의견을 더 강하게 관철하려던 의도로 파악된다. ‘위원회(보존회)’의 구성에서 조선총독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시의 규정에서도 확인된다.

표 5. 위원회(보존회)의 인적 구성과 의결에 관한 규정

위원회규정 (1916.7. 총훈 29호)	제3조 위원장은 정무총감으로 한다. 위원은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이를 임명하거나 또는 학식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이를 촉탁한다.
보존회관제 (1933.8. 칙령 224호)	제3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한다. 위원 및 임시위원은 조선총독의 주청에 의해 내각에서 임명한다.
보존회 의사규칙 (1933.12. 총훈 43호)	제6조 의사는 출석한 위원 및 임시위원을 합쳐 그 과반수로서 그것을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16 김윤정, 2011,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 景仁文化社, p.4.

17 김윤정, 2011, 앞의 책, pp.177~193.

18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 의사규칙」, 제1조(1933.12. 총훈 제43호).

19 朝鮮總督府, 1937(昭和12년).8,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要目』, pp.59~62.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장(委員長)과 회장(會長)을 ‘위원회’와 ‘보존회’ 모두에서 조선총독부의 2인자이며 행정책임자인 정무총감(政務總監)으로 명시하였으며, 조선총독부 관료의 위원 임명을 위원회에서 규정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보존회 의사규칙’에서는 이미 과반이 넘게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관료집단의 의사결정이 곧 위원회의 결정이 되도록 하는 ‘과반수의 결정’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3. 문화재 관련 위원회 특징과 의미

‘위원회(보존회)’의 구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그 특징과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결정의 전문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보존회)를 두었으나, 이 위원회(보존회)를 조선총독부의 편익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의중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정무총감을 위원장(회장)으로 하며 조선총독부 관료가 위원에 포함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으로 마련하였고, 실제 위원으로 임명된 관료의 수 또한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과반을 넘었다. 위원회에 속한 학자들은 상당수가 조선에 상주하지 않는 일본 대학의 교수들이었다. 이 또한 실제 회의에서 참석위원 중 관료의 비중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위원회’에서 시작하여 ‘보존회’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의중에 따라 정책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구성원의 직책과 참여 상황만 보더라도 이 위원회의 의결이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선인(朝鮮人)의 배제이다. ‘위원회’는 일제에 부역한 일부 행정인력(학무국장 이진호(李軫鎬), 사무관 유만겸(兪萬兼))과 친일인사로 구성된 중추원²⁰참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보존회’에서는 ‘위원회’보다 조선인의 수가 한두 명 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절대다수가 일본인이었고, 일부였던 조선인 역시 친일관료(사무관 김대익(金大翼))였거나 친일인사였다. 결국 일제는 한반도 문화재의 인식과 결정 과정에 조선인을 배제시켜 일본인의 시각으로 한반도의 문화재가 재단될 수밖에 없게 하였다. 김용진(金容鎭)과 최남선(崔南善)처럼 일부 참여한 조선인이 있기는 하나, 당시 다루던 문화재의 주 대상 분야와는 거리가 있었던 친일적 문화분야 인물이었다.²¹ 조선인의 친일화(親日化)가 상당히 진행된 시기에 위원회(보존회)에 임명된 조선인의 한두 명 증가는 큰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에 공식적으로 구성된 문화재 관련 위원회(보존회)는 형식적으로 전문적 자문기구를 표방하였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한반도의 문화재에 대해 일제가 가졌던 시각을 정책 결과로 반영할 수 밖에 없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의 하나가 조선총독부에서 공식화한 ‘목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겠다.

20 대한제국기의 중추원에는 의회의 기능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의 중추원은 조선총독에 예속된 형식상의 자문기관이었고, 일제에 부역한 조선인 고위관료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김윤정, 앞의 책, 2011.)

21 위원회에 참여한 조선인 중 문화분야의 인물로는 이능화, 김용진, 최남선이 있다.

이능화는 사학자로서 일제가 주도했던 조선사 편찬사업에도 참여하였으나, 역사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보존회 2부(명승과 천연기념물 소관)위원회에 배속되었다. 김용진은 친일적 활동을 한 서화가이나, 고건축과 고고미술품을 주 논의 대상으로 했던 문화재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최남선은 3.1운동에 참여하고 복역까지 하였으나, 1920년대 일제의 문화정책 시기에 변절하여 20년대 후반부터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하는 등 일제에 부역하게 되었고, 보존회 위원에도 초기부터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최남선 역시 문화재분야에는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독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도유호(都宥浩)와 같은 조선인 문화재 전문가가 보존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Ⅲ. 일제강점기 문화재 목록 변화

일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1910년 8월 강제병합을 한 이후로는 문화재 조사와 정리를 본격화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조사 → 정리(목록화) → 활용' 체계는 몇 번의 형식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 체계 내에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문화재를 특정한 후 이를 목록화 하여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거나 등록 '대장'에 기입하거나 '지정'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일제의 의도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영향을 받기도하며 생성된 '목록'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목록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고적 예비조사 목록 시기'²³로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한반도 최초로 전반적 문화재 목록이 만들어진 시기이고, 둘째는 '고적조사 목록 시기'로 고적조사사업의 결과로 문화재 목록이 다시 만들어진 시기이며, 셋째는 '지정 목록 시기'로 보존령에 따라 문화재의 지정목록이 만들어진 시기이다. 이 각각의 시기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⁴

1. 고적 예비조사 목록 시기(1909~1916)

이 시기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

시한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최초로 조사목록이 작성되었던 시기이다. 세키노타다시는 대한제국 탁지부 일본인 관리들의 촉탁(囑託)으로 한반도에 대한 고건축물 조사를 1909년~1911년에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는 일제통치에 활용되거나 참고해야 할 고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건축(建築) 전공자에게 맡긴 것이었기 때문에 조사의 주 대상은 고건축물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²⁵ 그러나 이 조사는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첫 종합적 문화재 조사라는 성격도 있었고, 야쓰이세이이쓰(谷井濟一)²⁶와 같은 고고학자도 동행하였기 때문에 조사 범위는 고건축뿐만 아니라 고분과 고분출토품과 같은 고고유적 및 고적 등으로 그 폭이 넓었다. 세키노타다시는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갑을병정(甲乙丙丁)으로 나누었다. 3년간의 조사 성과로 모두 667건이 정리되었으며, 대략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²⁷

표 6. 세키노타다시의 고건축·고적 조사 전체 종류별 현황

조사 연도	건축	고적	능묘	공예	비석	기타	계
1909	196	3	35	37	10	7	288
1910	240	7	2				249
1911	87	17	12	11	3		130
계	523	27	49	48	13	7	667

표 7. 세키노타다시의 고건축·고적 조사 전체 보존등급별 현황

조사 연도	갑	을	을, 병	병	정	없음	계
1909	49	106	2	96	35		288
1910	6	43	4	79	116	1	249
1911	16	53	4	24	33		130
계	71	202	10	199	184	1	667

22 엄밀히 말해 이 장의 목록 변화 세 시기 중 위원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목록은 2~3절의 시기이다. 1절의 목록은 세키노타다시가 공식적 위원회의 영향 없이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3 '고적 예비조사'라는 개념은 정인성의 연구(2016, 앞의 책, 12~19쪽)에서 제시되어 이를 참고하였다.

24 정인성은 '고적조사사업'을 기준으로 세 시기(1기: 19세기말~1916년까지, 2기: 1916년 이후, 3기: 1931년~)로 구분하였는데(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909년 「朝鮮古蹟調査」의 기억 - 「韓紅葉」과 谷井濟一의 조사기록』, p.14.), 필자는 문화재 '목록'의 발생과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25 김지선, 앞의 책, 2008, 11쪽.

26 야쓰이는 일제강점기에 백제지역의 고고유적을 활발하게 한 고고학자이며, 1922년~1933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최근 그의 조사기록들이 번역·발간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앞의 책)

27 이순자(2009, 앞의 책, pp.47~60.)의 목록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8. 세키노타다시의 고건축·고적 조사 '건축물' 보존등급별 현황

조사 연도	갑	을	을, 병	병	정	값없음	계
1909	23	65	1	76	31		196
1910	3	42		78	116	1	240
1911	2	35		18	32		87
계	28	142	1	172	179	1	523

위의 현황을 보면, 세키노타다시의 조사는 조사 본래 목적에 따라 고건축물 조사에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나머지는 대부분 능묘나 석불상(공예), 비석 등 야외에서 쉽게 관찰되는 문화재로, 야외의 구조물에 조사대상이 집중되었음이 보인다. 전적(典籍)류와 같은 동산(動産)문화재는 모두 7건(1%)으로, 모두 조사 초기인 1909년의 조사인데, 한 건은 대구의 '대구관찰道棠下題名記'²⁸, 나머지 6건은 모두 묘향산보현사의 회화·서적류²⁹이다. 이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대상으로 동산문화재는 애초부터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고려청자 등 한반도의 문화재들이 도굴꾼 등에 의해 무단으로 약탈·유출되던 시기인데³⁰, 일본인들이 동산(動産)문화재를 개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던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문화재 조사 대상으로 통치 활용을 위한 야외의 건조물만이 선택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일제가 한반도의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관리 대상'이 '조사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고적 조사 목록 시기(1917~1933)

이 시기는 1916년부터 시작된 고적조사사업(古蹟調査事業)으로 문화재 목록(고적 및 유물 등록대장)이 작성

된 시기이다.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에 대한 강점을 시작한 이후 증가하는 문화재에 관한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1916년 7월 4일 전문 8조의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고적과 유물의 정의를 하였고(제1조), 이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을 대장(臺帳)에 기재토록 하였고(제2조), 그 외 신고·현상 변경·허가 등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다(제3조~제8조). 이 규정의 의미는 한반도에서 보존대상 문화재의 명문화가 통치기관 차원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의 제정과 함께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만들어 기존 개별적 축적조사의 형태로 진행하던 문화재 조사사업을 총독부 차원에서 양성화 하였다. 이 고적조사 사업의 결과로 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목록이 만들어졌는데, 1917년 3월 15일에 처음으로 136건의 목록이 만들어졌고, 이후로 간헐적 목록 등재가 진행되어 1932년에는 226번까지의 목록이 작성되었다.³¹ 목록의 등재 과정은 '전국적인 기초조사로 목록 작성 → 고적조사위원회의 결의 → 총독의 재가 → 대장에 등록 → 등본(謄本)을 해당지역 경찰서장에게 송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³² 1926년을 기준으로 한 이 목록의 대략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³³

표 9. 고적조사사업으로 대장에 등록된 문화재 현황 (1917~1926, 상세 목록은 자료2. 참조)

세키노타다시의 목록과 겹치는 목록 수					세키노타다시의 목록과 겹치지 않는 목록 수	계
갑	을	병	정	계		
13	64	3	1	81	112	162

이 목록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불과 5~6년 전 광범위하게 진행된 세키노타다시의 목록이 크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전의 연구에서는 고적조사사업의 목록이

28 이순자, 2009, 앞의 책,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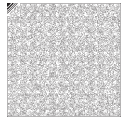
29 이순자, 2009, 앞의 책, p.54.

30 황수영 편, 2014,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단, / 정규홍, 2005, 『우리문화재 수난사』, 학연문화사, pp.31~46.

31 이현일·이명희, 2014, 앞의 글, pp.100~101.

32 이현일·이명희, 2014, 앞의 글, p.100.

33 이순자(2009, 앞의 책, pp.76~82.)의 목록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세키노타다시가 주도한 고건축·고적 조사 목록을 거의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³⁴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 고적조사사업으로 대장에 등록된 문화재 193건 중 세키노타다시의 목록에 없는 문화재가 112건으로 58%에 달한다.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된 ‘갑(甲)’과 ‘을(乙)’ 등급의 문화재도 상당 수 누락되었다. 이 193건 목록의 내용이 대부분 세키노타다시의 목록처럼 건축물 위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목록 사이에 상당히 다른 관점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 목록 작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보존규칙에도 세키노가 분류했던 주요 건조물들은 고적(古蹟)³⁵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따로 누락될 이유가 없다. 다음의 <표 10>을 보면 세키노타다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재가 제외된 상황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표 10. 고적조사사업 목록에 반영된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등급별 수

구분	갑	을	을, 병	병	정	값 없음	계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수	71	202	10	199	184	1	667
고적조사사업에 반영된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수(비율%)	13 (18%)	64 (31.7%)	0	3 (1.5%)	1 (0.5%)	0	81 (12.1%)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1차적 원인은 기초조사와 목록 작성을 다시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의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 제정과 동시에 제정된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근거로 중요 문화재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와 보고, 목록화를 다시 하였다. 전국적 조사 과정에서 기초 목록을 각 지방에서 제출하도록 하였는데,³⁶ 이 단계에서 세키노타다시의 목록이 적극적으로 참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수집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고적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라도 세키노타다시의 목록이 참고가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키노타다시의 목록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위원회에서조차 세키노타다시의 목록이 적극적으로 참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하면, 세키노타다시는 1922년~1935년 동안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과 박물관협의회원으로 활동한 인물로 나온다. 고적조사에 의한 첫 문화재 목록이 만들어지던 1917년에는 그의 활동사항이 직원록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1916년부터 조선총독부 주도로 본격 실행된 조선고적조사사업은 야쓰이세이이쓰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며,³⁷ 세키노타다시는 이 시기에 도쿄제국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였고, 1918년부터는 유럽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선의 문화재에 관계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³⁸ 이렇게 세키노가 조선에서 멀어지던 시기에 세키노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목록이 조선총독부의 첫 공식 문화재목록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참고가 될 만한 것은 이 시기에 조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구로이타가쓰미(黑板勝美)의 역할에 관한 사항이다. 그는 1916년의 보존규칙의 제정과 고적조사위원회 발족에 중심적인 활동을 한 역사학자였다.³⁹ 1916년에 제정된 전문 8조의 보존규칙 조항 중 4개 조가 ‘고적 및 유물대장’에 관한 사항인데, 이 보존규칙에 도입한 ‘대장법(臺帳法)’ 제도가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⁴⁰

34 최석영은 이순재(2009)의 연구도 같은 관점이라고 보고 있다(최석영, 2015, 앞의 책, p.132).

35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1916년 7월, 총독부령 제52조)

제1조 본령에서 고적이라 칭하는 것은 ... 도성, 궁전, 성채, 관문, ... 사찰, ... 탑, 비, 금석불, 당간, 석등 ...

36 이현일, 이명희, 2014, 앞의 글, p.100.

3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앞의 책, p.13.

38 세키노타다시가 남긴 일기를 정리하여 수록한 최근의 책에서 그의 유학기간은 大正7년(1918)~大正9년(1920)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묶여 정리되어 있다.(關野貞研究會, 2009, 「遊西日記」 『關野貞日記』, 中央公論美術出版, pp.281~480.)

39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 2001, 「구로이타 가쓰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만들어진 고대』, 삼인, p.210.

40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 2001, 앞의 글, p.218.

구로이타가쓰미는 구미유학(1908~1910) 후 문화제에 관한 학술적·제도적 관점에서의 종합적 건의를 『사학잡지(史學雜誌)』에 게재했는데(1912),⁴¹ 이 의견이 건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서 제도로 현실화(1916)된 것이다. 더군다나 192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조선의 역사와 문화제에 관한 사항은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종전의 세력들을 견제하고 배척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구성되어 활동했던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의 실질적 주도세력이 구로이타가쓰미였는데, 그는 이마니시류(今西龍)를 비롯하여 구반도사파(舊半島史派)와 고적조사파(古蹟調査派)에 대한 경계와 배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²

앞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문화제 목록 변화 원인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조심스럽게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반도에서 문화제에 관한 새 체계를 만들고자 한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기존의 세키노타다시의 조사목록이 어느 정도 무시되었을 수 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보존규칙을 만들고 문화제 목록을 작성하면서 기존의 조사자료와 목록을 멀리하고 자신의 뜻대로 조선에서 문화제에 관한 첫 제도와 목록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세키노타다시의 유학은 이러한 구로이타가쓰미의 활동을 더 용이하게 했을 수 있다.

3. 지정 목록 시기(1934~1945)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제정을 계기로 1934년 중요

문화제들에 대한 ‘지정(指定)’이 실시되면서부터 이 지정체계를 유지하던 1945년 광복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보존령」은 이전의 「보존규칙」과 비교하여 대상과 절차,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령 24개 조’, ‘시행규칙 40개 조’, ‘시행수속 14개 조’에 이르는 규모로 자세해진 것을 제외하면 ‘중요 대상의 특징과 그 관리체계’라는 면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⁴³ 이 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첫 사례는 1934년 8월 27일 조선총독부관보에 고시된 보물 153건, 고적 13건, 천연기념물 3건이다.⁴⁴ 이후 1~2년 정도 간격으로 추가 지정이 이루어져 1943년 12월 30일 보물 제419호, 고적 제145호, 천연기념물 제146호가 마지막으로 지정고시되었다.⁴⁵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관보에 지정 고시(告示)된 문화제 중 대다수를 차지한 보물(寶物)에 관한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문화제(보물) 현황

관번호수	일자	지정번호	지정건수
2290	昭和9(1934)년 8월 27일	1-153	153
2507	昭和10(1935)년 5월 24일	154-208	55
2730	昭和11(1936)년 2월 21일	209-235	27
2806	昭和11(1936)년 5월 23일	236-269	34
호외	昭和13(1938)년 5월 3일	270-296	27
3825	昭和14(1939)년 10월 18일	297-335	39
4058	昭和15(1940)년 7월 31일	336-377	42
4612	昭和17(1942)년 6월 15일	378-403	26
호외	昭和18(1943)년 12월 30일	404-419	16

1934년 최초의 지정을 기준으로, 이 시기의 지정 과정은 ‘각 도의 고적용지 조사 및 보고 → 보존회 총회의 결의 → 지정예정 목록의 보완과 완성 → 조선총독부 관보에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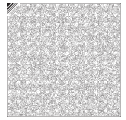
41 黒板勝美, 1912, 「史蹟遺物保存に關する意見書」, 『史學雜誌』 제5호.

42 정상우, 2014,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 편찬 사업 전후 일본인 연구자들의 갈등 양상과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pp.152~160.

43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제 ‘지정’ 목록은 1934년에 만들어진 것이 맞으나, 문화제 보존대상의 ‘특징과 관리’라는 면에서는 1917년의 목록이 최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면들을 볼 때 1934년의 형식적인 지정목록을 최초로 볼 것인지, 1917년의 내용적인 목록을 우선하여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4 朝鮮總督府告示 第430號, 朝鮮總督府官報 第2290號, 昭和9년8월27일, 201~204쪽.

45 朝鮮總督府告示 第1511號,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昭和18년12월30일, 12~13쪽.



정고시 → 소유자에게 통지 → 석표건립 및 보호책 설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⁴⁶ 1934년에 지정된 최초의 지정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1934년 지정 보물 종류별 현황(상세 목록은 자료3, 참조)

공예품	목조 건조물	서적전적	석조물	전조물	조각	계
7	20	2	101	3	20	153

1934년의 '지정목록'은 이전의 '고적 및 유물대장 목록'의 내용을 상당부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153건의 '지정목록' 중 '고적 및 유물대장 목록'에 없던 것이 66건이며, '고적 및 유물대장 목록'에 있던 것이 87건으로, 승계비율은 전체의 56.9% 정도이다. 이는 이전의 승계비율 42%에 비해 상승한 수치이다. 15%정도 되는 두 승계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적 및 유물대장 목록'에서 현존사찰의 문화재(54건)가 모두 제외되었던 특수상황⁴⁷을 제외하면, 이전의 '고적 및 유물대장 목록'에 없던 것은 12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12건의 목록 중 8건은 세키노타다시의 목록에 있던 것들이다. 세키노타다시의 목록 중 첫 번째 것이 1934년에 보물 1호로 지정되었으며, 세키노타다시가 조사했던 건축물도 이 시기부터 상당 수 보물의 지위를 얻었다.⁴⁸

1934년의 문화재(보물) 지정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앞의 <표 13>에서 보듯 세키노타다시의 목록이 보물 지정목록에 비중 있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문화재(보물) 인정 범위가 이전 시기보다 더 넓고 유연하게 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세키노타

표 13. 1934년 지정목록 중 새로 추가된 목록(현존사찰 문화재 제외)

指定 番號	種類	名稱	員數	所有者	소재지	세키노 등급
제1호	木造建築物	京城南大門	1	國	경기 경성부	갑
제2호	木造建築物	京城東大門	1	國	경기 경성부	을
제10호	木造建築物	開城南大門	1	國	경기 개성부	갑
제91호	彫刻	慶州拜里石佛立像	3	國	경북 경주군	을
제92호	石造物	新羅太宗武烈王陵碑	1	國	경북 경주군	갑
제93호	石造物	慶州普門里石槽	1	國	경북 경주군	
제102호	石造物	慶州孝峴里三層石塔	1	國	경북 경주군	
제103호	石造物	慶州皇南里孝子孫時揚旌閣碑	1	國	경북 경주군	
제127호	石造物	掘山寺址浮屠	1	國	강원 강릉군	
제136호	木造建築物	大同門	1	國	평남 평양부	을
제137호	木造建築物	浮碧樓	1	國	평남 평양부	을
제138호	木造建築物	普通門	1	國	평남 평양부	갑

시가 유학(1918~1920) 후 일본과 조선에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라는 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앞선 '고적 및 유물대장 목록'에 반영되지 않았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가 상당 수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찰령(寺刹令)의 효력과 관련되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제강점 초기부터 현존사찰 소유의 문화재는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1916년 시행)」보다 먼저 시행된 「사찰령(1911년 시행)」에 의해 별도로 목록화되고 관리되었다. 현존 사찰의 문화재가 굳이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의 범위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존령」이 제정되고 지정문화재가 공포되던 1934년 경에는 사찰령의 폐지운동이 있었고, 사찰령의 후속인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이 폐지(1936년)를

46 이현일·이명희, 2014, 앞의 글, pp.105~106.

47 이 시기에 '고적과 유물에 대한 조사와 목록화'라는 정책과는 별도로 사찰 소유의 문화재는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보다 먼저인 1911년 6월 3일에 시행된 「사찰령」(조선총독부 법률제30호)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이 체제는 사찰령의 후속 규정인 「신사사원규칙」이 폐지된 1936년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목록이 만들어지던 1924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金振元, 2012, 『朝鮮總督府의 佛敎文化財 政策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博士學位論文)

48 이순자, 2009, 앞의 책, pp.47~60.

앞두고 있는 등 사찰 문화재 관련 법규가 느슨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현존사찰의 문화재도 새로 제정되는 문화재 관련 법규의 테두리 내에 두고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들도 새로 지정되는 문화재(보물)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목록의 변화로 본 일제의 문화재 정책

일제에 의해 조사되고 목록화된 우리 문화재는 그들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세 번의 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처음으로 문화재 제도화 이전에 ‘조사’가 선행되었는데, 그들의 정책적 필요가 반영된 조사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전문 학자에 의해 ‘고건축물(古建築物)’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주요 동산문화재들(회화, 서적, 도자기 등)이 골동품이라는 관점에서 상당수 유출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당시 지배권력에게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공식화한 문화재 목록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재가 목록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의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보 1호(숭례문(崇禮門))와 보물 1호(흥인지문(興仁之門))가 모두 동산(動産)이 아닌 부동산(不動産) 문화재가 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예비조사 성격의 광범위한 조사 이후에는 문화재 조사를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이라는 제도로 공식화 하여 다시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목록을 다시 만들었다. 이 조사와 목록화의 기본 체계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는 이전에 조사를 주도한 세키노타다시의 등급제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세키노타다시의 목록과 등급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시기의 주요 문화재 중 사찰 소장 문화재는 「사찰령」이라는 별도의 제도 하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재 목록에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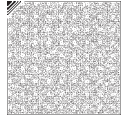
예비조사와 고적조사로 한반도의 문화재에 대한 대략의 조사를 진행한 일제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제정을 통해 보호정책을 표방하였다. 이 「보존령」을 통해 지정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첫 문화재 지정목록이 작성, 공표되었다. 이 지정목록에는 이전에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문화재와 세키노타다시가 조사했던 문화재, 명승과 천연기념물도 추가로 반영이 되어 이전 시기에 비해 완성도 있는 공식 문화재 목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형성된 지정문화재에 대한 기본적 체계가 큰 틀에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조선총독부는 그들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 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다.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한반도 문화재의 목록화 과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들마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 관련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흔히 채용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조선총독부가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관(官)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은 문화재에 대한 일제의 강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 사례가 전쟁물자 동원을 위해 사적을 지정 해제한 ‘휴류산성’의 경우이다.⁴⁹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문화재는 목록의 작성 계기를 기준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은 등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이 되었다. 이로써 1934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글은 일제의 한반도 문화재 정책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와 ‘목록’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위원회의 구성과 변화 과정 분석을 통해 일제의 강압성을 증명하고자 하였고, 목록의 변화를 통해 일제가 한반도의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변화를 읽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문화재 정책 전체를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 실제 문화재 행정의 결과와 영향, 동 시기 국제동향 등 또 다른 차원의 분석과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한반도의 공식적 문화재 체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더 근접할 수 있다고 본다.

49 주 14) 참조.

참고문헌

논문

- 金志宣, 2008, 『조선총독부 문화재 정책의 변화와 특성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高麗大學校 大學院 韓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金振元, 2012, 『朝鮮總督府의 佛敎文化財 政策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博士學位論文
- 박선애, 2007,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정리사업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吳世卓, 1982, 『文化財保護法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行政法專攻 博士學位論文
- 吳世卓, 1996, 「일제(日帝)의 문화재정책(文化財政策) - 그 제도적(制度的) 측면(側面)을 중심(中心)으로」 『文化財』 29
- 吳世卓, 1997, 「문화재보호법과 그 문제점」 『文化財』 30
- 이현일 · 이명희, 2014,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과 지정」 『美術資料』 85
- 이성시, 2016, 「구로이다 가쓰미(黑板勝美)의 역사학 연구와 식민주의」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함께
-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축탁(囑託)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한국역사연구회
- 정상우, 2014,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 편찬 사업 전후 일본인 연구자들의 갈등 양상과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 黑板勝美, 1912, 「史蹟遺物保存に關する意見書」 『史學雜誌』 제5호
- 關野貞研究會, 2009, 「遊西日記」 『關野貞日記』, 中央公論美術出版

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909년 「朝鮮古蹟調査」의 기억 - 「韓紅葉」과 谷井濟一의 조사기록』
- 김윤정, 2011,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 景仁文化社
- 문화재관리국, 1996.12,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수원시, 1997.9, 『문화유산대토론회』
-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 - 근대 국민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 정규홍, 2005, 『우리 문화재 수난사 - 일제기 문화재 약탈과 유린』, 학연문화사
- 최석영, 2015, 『일제의 조선(朝鮮) 「식민지 고고학」과 식민지 이후』, 서강대학교출판부
- 황수영 편, 2014,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朝鮮總督府, 1916~1945, 『朝鮮總督府官報』
- 朝鮮總督府, 1937,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要目』

참고사이트

- 문화재청(<http://www.cha.go.kr>)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http://modern-history.museum.go.kr>)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http://theme.archives.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http://db.histor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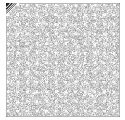


자료 1.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위원 명단(소화2년(1937) 8월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직위	직책	이름
會長	朝鮮總督府 政務總監	大野綠一郎
第一部 委員	拓務書記官	眞室亞夫
"	內務局長	大竹十郎
"	財務局長	林繁藏
"	殖産局長	穂積眞六郎
"	農林局長	矢島杉造
"	學務局長	鹽原時三郎
"	警務局長	三橋孝一郎
"	鐵道局長	吉田浩
"	事務官	山澤和三郎
"	"	藤本修三
"	"	金大羽
"	京城帝國大學教授	田中豊藏
"	"	藤田亮策
"	東京帝國大學教授	池内宏
"	"	藤島玄治郎
"	東京帝國大學助教授	原田淑人
"	京都帝國大學教授	濱田耕作
"	京都帝國大學助教授	梅原末治
"	朝鮮總督府中樞院參議	柳正秀
"	正三位勳二等	黑板勝美
"	正四位勳二等	天沼俊一
"	從三位勳三等	小田省吾
"		鮎貝房之進
"		小場恒吉
"		金容鎮
"		崔南善
第二部 委員	拓務書記官	眞室亞夫
"	內務局長	大竹十郎
"	財務局長	林繁藏
"	殖産局長	穂積眞六郎
"	農林局長	矢島杉造
"	學務局長	鹽原時三郎
"	警務局長	三橋孝一郎
"	鐵道局長	吉田浩
"	事務官	山澤和三郎
"	"	藤本修三
"	"	金大羽
"	京城帝國大學教授	藤田亮策
"	東京帝國大學教授	鍋木外岐雄
"	朝鮮總督府技師	立岩巖
"	京城帝國大學豫科教授	森爲三
"	朝鮮總督府水原高等農林學校 教授	植木秀幹
"	正三位勳二等	三好學
"	正五位勳六等	李能和
간사	朝鮮總督府事務官	金大羽
서기	朝鮮總督府 屬	葛城末治
"	"	崔華石
"	"	長沼貞次郎
"	朝鮮總督府 技手	小川敬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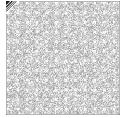
자료 2. 조선고적조사사업 결과로 작성된 목록(1917~1926, 이순자(2009))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등급
1	원각사지10층석탑(圓覺寺址10層石塔)	경기도 경성부 종로 2정목 38번지 탑동공원	을
2	원각사비(圓覺寺碑)	경기도 경성부 종로 2정목 38번지 탑동공원	을
3	보신각종(普信閣鐘)	경기도 경성부 종로 2정목 102번지	을
4	장의사지당간지주(莊義寺址幢竿支柱)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신영리	
5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 비봉	
6	중초사지당간지주(中初寺址幢竿支柱)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	
7	중초사지3층석탑(中初寺址三層石塔)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	
8	중초사지마애종(中初寺址磨崖鐘)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	
9	광주구읍5층석탑(廣州舊邑五層石塔)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춘궁리	
10	광주구읍3층석탑(廣州舊邑三層石塔)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춘궁리	
11	삼전도청태종공덕비(三田渡淸太宗功德碑)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송파동	을
12	창성사지진각국사비(彰聖寺址眞覺國師碑)	경기도 수원군 일형면 상광교리 광교산	
13	고달사지원종대사혜진탑(高達寺址元宗大師慧眞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을
14	고달사지원종대사혜진탑비(高達寺址元宗大師慧眞塔碑)	경기도 경성부 경복궁 조선총독부박물관	을
15	고달사지승탑(高達寺址僧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을
16	고달사지귀부(高達寺址龜趺)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을
17	고달사지석불좌(高達寺址石佛座)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을
18	여주하리3층석탑(麗州下里三層石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하리	을
19	여주창리3층석탑(麗主倉里三層石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창리	을
20	보제사지대경대사현기탑비(菩提寺址大鏡大師玄機塔碑)	경기도 경성부 경복궁 조선총독부박물관	
21	파주호미리2체석불상(坡州虎尾里二軀石佛像)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22	서봉사지현오국사탑비(瑞峰寺址玄悟國師塔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신봉리	
23	영통사지대각국사비(靈通寺址大覺國師碑)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현화리 영통동	갑
24	영통사지오층석탑(靈通寺址五層石塔)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현화리 영통동	을
25	영통사지동삼층석탑(靈通寺址東三層石塔)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현화리 영통동	을
26	영통사지서삼층석탑(靈通寺址西三層石塔)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현화리 영통동	을
27	현화사비(玄化寺碑)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현화리 현화동	갑
28	현화사지7층석탑(玄化寺址七層石塔)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현화리 현화동	갑
29	개성첨성대(開城瞻星臺)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만월정	을
30	선죽교(善竹橋)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원정	병
31	강화종각종(江華鐘閣鐘)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관청리	병
32	강화하점면오층석탑(江華河帖面五層石塔)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33	용두사지철당간(龍頭寺址鐵幢竿)	충북청 주군청주면 본정 3정목 청주경찰서구내	
34	충주탑정리7층석탑(忠州塔亭里七層石塔)	충북 충주군 가금면 탑평리	을
35	정토사지법경대사자등탑비(淨土寺址法鏡大師慈燈塔碑)	충북 충주군 동량면 하천리	을
36	충주남문외철불상(忠州南門外鐵佛像)	충북 충주군 충주면 충주읍내	을
37	억정사지대지국사비(億政寺址大智國師碑)	충북 충주군 엄정면 괴동리	
38	월광사지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月光寺址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	경기도 경성부 경복궁 조선총독부박물관	을
39	사지빈체사지사층석탑(師子頻次寺址四層石塔)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을
40	괴산신공리마애이체불상(槐山新豊里磨崖二軀佛像)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1	괴산미륵당리석불상(槐山彌勒堂里石佛像)	충북 괴산군 상모군 미륵리	
42	괴산미륵당리오층석탑(槐山彌勒堂里五層石塔)	충북 괴산군 상모군 미륵리	
43	부여읍남오층석탑(平百濟塔)(扶餘邑南五層石塔)	충남 부여군 부여면 동남리	갑
44	부여읍남석불상(扶餘邑南石佛像)	충남 부여군 부여면 동남리	을
45	유인원기공비(劉仁願紀功碑)	충남 부여군 부여면 관북밀부소산	을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등급
46	부여읍내석조1(扶餘邑內石槽)	충남 부여군 부여면 구아리	
47	부여읍내석조2(扶餘邑內石槽)	충남 부여군 부여면 구아리	
48	보광사중창비(普光寺重創碑)	충남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49	강당사지법민국사보승탑(講堂寺址法印國師寶乘塔)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50	강당사지법민국사보승탑비(講堂寺址法印國師寶乘塔碑)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51	강당사지철불상(講堂寺址鐵佛像)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52	강당사지오층석탑(講堂寺址五層石塔)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53	강당사지당간지주(講堂寺址幢竿支柱)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54	강당사지석조(講堂寺址石槽)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55	안국사지3체석불상(安國寺址三體石佛像)	충남 서산군 정미면 수당리	
56	안국사지석탑(安國寺址石塔)	충남 서산군 정미면 수당리	
57	성주사지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址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충남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	
58	성주사지5층석탑(聖住寺址五層石塔)	충남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	
59	성주사지중앙3층석탑(聖住寺址中央三層石塔)	충남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	
60	성주사지서3층석탑(聖住寺址西三層石塔)	충남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	
61	봉선홍경사갈(奉先弘慶寺碣)	충남 천안군 성현면 대흥리	
62	천흥사지당간지주(天興寺址幢竿支柱)	충남 천안군 거성면 천흥리	
63	청양읍내3층석탑(靑陽邑內三層石塔)	충남 청양군 청양면 읍내리	
64	청양읍내3체석불상(靑陽邑內三體石佛像)	충남 청양군 청양면 읍내리	
65	정산서정리9층석탑(定山西亭里九層石塔)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66	개태사지3체석불상(開泰寺址三體石佛像)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67	개태사지철부(開泰寺址鐵釜)	경기도 경성부 경복궁 조선총독부박물관	
68	서천봉남리3층석탑(舒川烽南里三層石塔)	충남 서천군 서남면 봉남리	
69	미륵사지당간지주(彌勒寺址幢竿支柱)	전북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을
70	미륵사지석탑(彌勒寺址石塔)	전북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갑
71	익산석불리석불상(益山石佛里石佛像)	전북 익산군 삼기면 연동리	을
72	익산고도리쌍석불상(益山古都里雙石佛像)	전북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을
73	만복사지석불상(萬福寺址石佛像)	전북 남원군 남원면 왕정리	갑
74	만복사지오층석탑(萬福寺址五層石塔)	전북 남원군 남원면 왕정리	을
75	만복사지석좌(萬福寺址石座)	전북 남원군 남원면 왕정리	을
76	만복사지당간지주(萬福寺址幢竿支柱)	전북 남원군 남원면 왕정리	을
77	용담사지석불상(龍潭寺址石佛像)	전북 남원군 주천면 용담리	
78	용담사지7층석탑(龍潭寺址七層石塔)	전북 남원군 주천면 용담리	
79	용담사지석탑(龍潭寺址石塔)	전북 남원군 주천면 용담리	
80	나주북문외3층석탑(羅州北門外三層石塔)	전남 나주군 나주면 과원정	을
81	나주동문외석당간(羅州東門外石幢竿)	전남 나주군 나주면 북문정	을
82	나주서문내석등(羅州西門內石燈)	전남 나주군 나주면 금정	을
83	개선사지석등(開仙寺址石燈)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 개선동	을
84	광주읍동5층석탑(光州邑東五層石塔)	전남 광주군 서방면 동계리	을
85	광주읍서5층석탑(光州邑西五層石塔)	전남 광주군 광주면 향사리	을
86	광주북문외석불상(光州北門外石佛像)	전남 광주군 광주면 수기옥정	정
87	광주읍내철불상(光州邑內鐵佛像)	전남 광주군 광주면 수기옥정	
88	신라무열왕릉비이수급귀부(新羅武烈王陵碑螭首及龜趺)	경북 경주군 경주면 서악리	갑
89	신라성덕왕신종(新羅聖德王神鐘)	경북 동부리 경주 고적보존회진열관	을
90	경주첨성대(慶州瞻星臺)	경북 경주군 경주면 인왕리	갑
91	굴불사지석각불상(掘佛寺址石刻佛像)	경북 경주군 천북면 동천리 금강산	갑
92	경주석빙고(慶州石氷庫)	경북 경주군 경주면 인왕리 월성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등급
93	무장사지미타전비이수귀부(釜藏寺址彌陀殿碑螭首龜趺)	경북 경주군 경주면 내동면 암흑리	
94	무장사지석탑(釜藏寺址石塔)	경북 경주군 경주면 내동면 암흑리	
95	고선사지3층석탑(高仙寺址三層石塔)	경북 경주군 내동면 덕동리	
96	경주읍내석불상(慶州邑內石佛像)	경북 경주군 경주면 동부리 경주고적보존회진열관	
97	망덕사지당간지주(望德寺址幢竿支柱)	경북 경주군 내동면 배반리	을
98	정혜사지13층석탑(淨慧寺址十三層石塔)	경북 경주군 강서면 옥산리	갑
99	경주서악리3층석탑(慶州西岳里三層石塔)	경북 경주군 경주면 서악리	을
100	경주남산리3층석탑(慶州南山里三層石塔)	경북 경주군 내동면 남산리	
101	경주나원리5층석탑(慶州羅原里五層石塔)	경북 경주군 건국면 나원리	을
102	태자사랑공대사백월서운탑비(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	경기도 경성부 경복궁 조선총독부박물관	
103	숙수사지당간지주(宿水寺址幢竿支柱)	경북 영주군 순흥면 내죽리	을
104	영주사현정리당간지주(榮州四賢井里幢竿支柱)	경북 영주군 순흥면 읍내리	을
105	영주영주리석불상(榮州榮州里石佛像)	경북 영주군 영주면 영주리	
106	개심사지5층석탑(開心寺址五層石塔)	경북 예천군 예천면 남본동	을
107	동사지3층석탑(東寺址三層石塔)	경북 예천군 예천면 동본동	을
108	동사지석불상(東寺址石佛像)	경북 예천군 예천면 동본동	을
109	상주화달리3층석탑(尙州化達里三層石塔)	경북 상주군 사벌면 화달동	을
110	상주지사리전탑(尙州芝沙里磚塔)	경북 상주군 외남면 지사리	
111	문경내화리3층석탑(聞慶內化里三層石塔)	경북 문경군 산북면 내화리	을
112	고령쾌빈동3층석탑(高靈快賓洞三層石塔)	경북 고령군 고령면 쾌빈동	
113	고령지산동당간지주(高靈池山洞幢竿支柱)	경북 고령군 고령면 지산동	을
114	청도송서동3층석탑(淸道松西洞三層石塔)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동 탑평	
115	창녕읍내신라진흥왕척경비(昌寧邑內新羅眞興王拓境碑)	경남 창녕군 창녕면 교상동	
116	통도사국장생석표(通度寺國長生石標)	경남 양산군 하북면 답곡동	
117	월광사지3층석탑(月光寺址三層石塔)	경남 함천군 아로면 월광리	
118	봉산지탑리3층석탑(鳳山智塔里三層石塔)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지탑리	
119	광조사지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廣照寺址眞徹大師寶月乘空塔碑)	황해도 해주군 금산면 냉정리 수미창	
120	해주백세청풍비(海州百世淸風碑)	황해도 해주군 영동면 청풍리 청성묘	
121	해주타나니석당(海州陀羅尼石幢)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남옥정	
122	평양성벽석각(平壤城壁石刻)	평남 평양부 산수정 평안 평안남도청	
123	평양기자정(平壤箕子井)	평남 평양부 약송정	병
124	평양정거장전7층석탑(平壤停車場前七層石塔)	평남 평양부 흥매정	을
125	평양종각중(平壤鐘閣鐘)	평남 평양부 이문리	을
126	점선현사산비(黏蟬縣新山碑)	평남 용강군 해운면 용정리	
127	자복사지5층석탑(慈福寺址五層石塔)	평남 성천군 성천면 상부리(처인리)	을
128	용천타라니석당(龍川陀羅尼石幢)	평북 용천군 읍동면 동부동	
129	용천서문외석당(龍川西門外石幢)	평북 용천군 동하면 사흥동	
130	용천읍내이체석불상(龍川邑內二體石佛像)	평북 용천군 읍동면 성동동	
131	용천읍내쌍석수(龍川邑內雙石獸)	평북 용천군 읍동면 성동동	
132	풍천원석등(楓川原石燈)	강원도 철원군 북면 흥원리	
133	황초령신라진흥왕순수비(黃草嶺新羅眞興王巡狩碑)	함남 함흥군 하기천면 진흥리	
134	북청여진자석각(北靑女眞字石刻)	함남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해안	
135	백두산정계표(白頭山定界標)	함북 무산군 삼장면 농사동 백두산 동남부	
136	경원여진자비(慶源女眞字碑)	경기도 경성부 경복궁 조선총독부박물관	
137	연복사중(演福寺鐘)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북본정	갑
138	익산왕궁오층석탑(益山王宮五層石塔)	전북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갑
139	만복사지이왕석상(萬福寺址二王石像)	전북 남원군 남원면 왕정리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등급
140	흥덕왕릉석수(興德王陵石獸)	경북 경주군 강서면 육통리 흥덕왕릉	갑
141	경주읍내석수(慶州邑內石獸)	경북 경주군 경주면 동부리 경주 고적보존회진열관	
142	성천처인리3층석탑(成川處仁里三層石塔)	평남 성천군 성천면 상부리(처인리)	
143	경주서악리마애석불상(慶州西岳里磨崖石佛像)	경북 경주군 경주면 서악리	
144	영주사현정리3층석탑(榮州四賢井里三層石塔)	경북 영주군 순흥면 읍내리	
145	영주석교리3층석불상(榮州石橋里三層石佛像)	경북 영주군 순흥면 석교리	
146	안동신세동7층벽탑(安東新世洞七層壁塔)	경북 안동군 안동면 신세동	을
147	안동동부동5층벽탑(安東東部洞五層壁塔)	경북 안동군 안동면 동부동	을
148	안동조탑동5층벽탑(安東造塔洞五層壁塔)	경북 안동군 일직면 조탑동	을
149	안동왕리동3층석탑(安東王里洞三層石塔)	경북 안동군 안동면 옥리동	을
150	안동안기동석불상(安東安奇洞石佛像)	경북 안동군 안동면 동기동	
151	안동이송천동석불상(安東二松川洞石佛像)	경북 안동군 서후면 이송천동	
152	상주증촌리석각불상(尙州曾村里石刻佛像)	경북 상주군 함창면 증촌리	
153	상주증촌리석불상(尙州曾村里石佛像)	경북 상주군 함창면 증촌리	
154	상주북룡리석불상(尙州伏龍里石佛像)	경북 상주군 상주면 북룡리	
155	봉화서동리3층석탑(奉化西洞里三層石塔)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을
156	창녕술정리동3층석탑(昌寧述亭里東三層石塔)	경남 창녕군 창녕면 술정리	
157	창녕송현동석불상(昌寧松峴洞石佛像)	경남 창녕군 창녕면 송현동	
158	창녕교동석불상(昌寧校洞石佛像)	경남 창녕군 창녕면 면교동	
159	봉림사지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鳳林寺址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	경기도 경성부 경복궁 조선총독부박물관	
160	하동신흥리수중석각(河東新興里水中石刻)	경남 하동군 화개면 신흥리	
161	반야사지원경왕사비(般若寺址元景王師碑)	경남 함천군 가야면 인리	
162	함안대산리3층석불상(咸安大山里三層石佛像)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63	단속사지동동구석각(斷俗寺址東洞口石刻)	경남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164	단속사지동3층석탑(斷俗寺址東三層石塔)	경남 산청군 단성면 윤리	
165	단속사지서3층석탑(斷俗寺址西三層石塔)	경남 산청군 단성면 윤리	
166	남해양아리석각(南海良阿里石刻)	경남 남해군 이동면 양하리	
167	해주읍내석빙고(海州邑內石氷庫)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상정	
168	신복사지3층석탑(神福寺址三層石塔)	강원도 강릉군 성남면 내곡리 심복동	을
169	신복사지석불상(神福寺址石佛像)	강원도 강릉군 성남면 내곡리 심복동	을
170	한송사지석불상(寒松寺址石佛像)	강원도 강릉군 강릉면 대화정 강릉군청	을
171	강릉수문리당간지주(江陵水門里幢竿支柱)	강원도 강릉군 강릉면 옥천정(원수문리)	을
172	강릉수문리석불상(江陵水門里石佛像)	강원도 강릉군 강릉면 옥천정(원수문리)	
173	굴산사지석탑(崛山寺址石塔)	강원도 강릉군 구정면 학산리 석천동	
174	굴산사지당간지주(崛山寺址幢竿支柱)	강원도 강릉군 구정면 금광평	
175	굴산사지석불상1(崛山寺址石佛像)	강원도 강릉군 구정면 금광평	
176	굴산사지석불상2(崛山寺址石佛像)	강원도 강릉군 구정면 금광평	
177	강릉대창리석불상(江陵大昌里石佛像)	강원도 강릉군 강릉면 옥천정(원대창리)	
178	강릉대창리당간지주(江陵大昌里幢竿支柱)	강원도 강릉군 강릉면 옥천정(원대창리)	을
179	영랑비초석(永郎碑礎石)	강원도 강릉군 강릉면 하시동리	
180	거둔사지원공국사승묘탑비(居頓寺址圓空國師勝妙塔碑)	강원도 원주군 부논면 정산리 거론동	을
181	흥법사지3층석탑(興法寺址三層石塔)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안창리 흥법동	을
182	평창유동리5층석탑(平昌柳洞里五層石塔)	강원도 평창군 평창면 유동리	을
183	춘천선요선당리7층석탑(春川仙要仙堂里七層石塔)	강원도 춘천군 춘천면 요선동리	을
184	춘천전평리당간지주(春川前坪里幢竿支柱)	강원도 춘천군 춘천면 전평리	을
185	춘천우두리석불상(春川牛頭里石佛像)	강원도 춘천군 신북면 우두리	
186	없음	없음	
187	서림사지3층석탑(西林寺址三層石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188	서림사지석불상(西林寺址石佛像)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등급
189	장연사지3층석탑(長淵寺址三層石塔)	강원도 회양군 장양면 장연리	
190	회양현리3층석탑(淮陽縣里三層石塔)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 현리	
191	안풍사지5층석탑(安豊寺址五層石塔)	강원도 회양군 안풍면 가동리 탑가원	
192	홍천희망리3층석탑(洪川希望里三層石塔)	강원도 홍천군 홍천면 희망리	
193	홍천희망리당간지주(洪川希望里幢竿支柱)	강원도 홍천군 홍천면 희망리	

자료 3. 문화재(보물) 지정 목록(1934, 조선총독부관보 제2290호)

指定番號	種類	名稱	員數	所有者	소재지
제1호	木造建築物	京城南大門	1	國	경기 경성부
제2호	木造建築物	京城東大門	1	國	경기 경성부
제3호	工藝品	京城普信閣鐘	1	國	경기 경성부
제4호	石造物	圓覺寺址多層石塔	1	國	경기 경성부
제5호	石造物	圓覺寺碑	1	國	경기 경성부
제6호	石造物	中初寺幢竿支柱	1	國	경기 시흥군
제7호	石造物	中初寺三層石塔	1	國	경기 시흥군
제8호	石造物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1	國	경기 고양군
제9호	石造物	開城瞻星臺	1	國	경기 개성부
제10호	木造建築物	開城南大門	1	國	경기 개성부
제11호	工藝品	開城演福寺鐘	1	國	경기 개성부
제12호	木造建築物	觀音寺大雄殿	1	觀音寺	경기 개풍군
제13호	石造物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之龜趺及螭首	2	國	경기 여주군
제14호	石造物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	1	國	경기 여주군
제15호	石造物	高達寺址浮屠	1	國	경기 여주군
제16호	石造物	高達寺址石佛座	1	國	경기 여주군
제17호	石造物	瑞峯寺址玄悟國師塔碑	1	國	경기 용인군
제18호	石造物	江華河岫面五層石塔	1	國	경기 강화군
제19호	工藝品	江華銅鐘	1	國	경기 강화군
제20호	石造物	廣州春宮里五層石塔	1	國	경기 광주군
제21호	石造物	廣州春宮里三層石塔	1	國	경기 광주군
제22호	石造物	彰聖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1	國	경기 수원군
제23호	石造物	法住寺雙獅石燈	1	法住寺	충북 보은군
제24호	石造物	法住寺四天王石燈	1	法住寺	충북 보은군
제25호	石造物	億政寺大智國師碑	1	國	충북 충주군
제26호	石造物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1	國	충북 충주군
제27호	石造物	忠州塔亭里七層石塔	1	國	충북 충주군
제28호	石造物	奉先弘慶寺碣	1	國	충남 천안군
제29호	石造物	定山西亭里九層石塔	1	國	충남 청양군
제30호	石造物	聖住寺郎慧和尚白月光塔碑	1	國	충남 보령군
제31호	石造物	聖住寺址五層石塔	1	國	충남 보령군
제32호	石造物	聖住寺址中央三層石塔	1	國	충남 보령군
제33호	石造物	扶餘平百濟塔	1	國	충남 부여군
제34호	石造物	唐劉仁願紀功碑	1	國	충남 부여군
제35호	石造物	金山寺露柱	1	金山寺	전북 김제군
제36호	石造物	金山寺石連臺	1	金山寺	전북 김제군
제37호	石造物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1	金山寺	전북 김제군
제38호	石造物	金山寺五層石塔	1	金山寺	전북 김제군
제39호	石造物	金山寺石鐘	1	金山寺	전북 김제군



指定番號	種類	名稱	員數	所有者	소재지
제40호	石造物	金山寺六角多層石塔	1	金山寺	전북 김제군
제41호	石造物	金山寺幢竿支柱	1	金山寺	전북 김제군
제42호	石造物	金山寺深源庵北崗三層石塔	1	金山寺	전북 김제군
제43호	石造物	萬福寺址五層石塔	1	國	전북 남원군
제44호	石造物	萬福寺址石座	1	國	전북 남원군
제45호	石造物	萬福寺址幢竿支柱	1	國	전북 남원군
제46호	石造物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	1	實相寺	전북 남원군
제47호	石造物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	1	實相寺	전북 남원군
제48호	石造物	實相寺石燈	1	實相寺	전북 남원군
제49호	石造物	實相寺浮屠	1	實相寺	전북 남원군
제50호	石造物	實相寺三層石塔	2	實相寺	전북 남원군
제51호	石造物	實相寺證覺大師凝寥塔	1	實相寺	전북 남원군
제52호	石造物	實相寺證覺大師凝寥塔碑	1	實相寺	전북 남원군
제53호	石造物	實相寺百丈庵石燈	1	實相寺	전북 남원군
제54호	石造物	實相寺百丈庵三層石塔	1	實相寺	전북 남원군
제55호	彫刻	實相寺鐵製如來座像	1	實相寺	전북 남원군
제56호	彫刻	龍潭寺址石佛立像	1	國	전북 남원군
제57호	彫刻	萬福寺址石佛立像	1	國	전북 남원군
제58호	石造物	益山王宮里五層石塔	1	國	전북 익산군
제59호	石造物	彌勒寺址石塔	1	國	전북 익산군
제60호	彫刻	益山石佛里石佛座像	1	國	전북 익산군
제61호	彫刻	益山古都里石佛立像	2	國	전북 익산군
제62호	石造物	聖住寺址三層石塔	1	國	충남 보령군
제63호	石造物	華嚴寺覺皇殿前石塔	1	華嚴寺	전남 구례군
제64호	彫刻	大興寺北彌勒庵磨崖如來座像	1	大興寺	전남 해남군
제65호	石造物	羅州東門外石幢竿	1	國	전남 나주군
제66호	石造物	羅州北門外三層石塔	1	國	전남 나주군
제67호	木造建築物	無爲寺極樂殿	1	無爲寺	전남 강진군
제68호	木造建築物	銀海寺居祖庵靈山殿	1	銀海寺	경북 영천군
제69호	石造物	聞慶內化里三層石塔	1	國	경북 문경군
제70호	石造物	奉化西洞里三層石塔	2	國	경북 봉화군
제71호	石造物	開心寺址五層石塔	1	國	경북 예천군
제72호	石造物	高靈池山洞幢竿支柱	1	國	경북 고령군
제73호	木造建築物	鳳停寺極樂殿	1	鳳停寺	경북 안동군
제74호	木造建築物	鳳停寺大雄殿	1	鳳停寺	경북 안동군
제75호	塼造物	安東東部洞五層壁塔	1	國	경북 안동군
제76호	塼造物	安東新世洞七層壁塔	1	國	경북 안동군
제77호	塼造物	安東造塔洞五層壁塔	1	國	경북 안동군
제78호	彫刻	安東安奇洞石佛座像	1	國	경북 안동군
제79호	石造物	浮石寺大雄殿前石燈	1	浮石寺	경북 영주군
제80호	木造建築物	浮石寺無量壽殿	1	浮石寺	경북 영주군
제81호	木造建築物	浮石寺祖師堂	1	浮石寺	경북 영주군

指定番號	種類	名稱	員數	所有者	소재지
제82호	石造物	宿水寺址幢竿支柱	1	國	경북 영주군
제83호	彫刻	榮州榮州里石佛立像	1	國	경북 영주군
제84호	石造物	佛國寺多寶塔	1	佛國寺	경북 경주군
제85호	石造物	佛國寺三層石塔	1	佛國寺	경북 경주군
제86호	石造物	佛國寺舍利塔	1	佛國寺	경북 경주군
제87호	石造物	佛國寺蓮華橋七寶矯	1	佛國寺	경북 경주군
제88호	石造物	佛國寺靑雲橋白雲橋	1	佛國寺	경북 경주군
제89호	石造物	石窟庵石窟	1	石窟庵	경북 경주군
제90호	彫刻	慶州西岳里磨崖石佛像	1	國	경북 경주군
제91호	彫刻	慶州拜里石佛立像	3	國	경북 경주군
제92호	石造物	新羅太宗武烈王陵碑	1	國	경북 경주군
제93호	石造物	慶州普門里石槽	1	國	경북 경주군
제94호	石造物	慶州西岳里三層石塔	1	國	경북 경주군
제95호	石造物	慶州石水庫	1	國	경북 경주군
제96호	彫刻	佛國寺金銅盧舍那佛坐像	1	佛國寺	경북 경주군
제97호	彫刻	佛國寺金銅阿彌陀如來坐像	1	佛國寺	경북 경주군
제98호	彫刻	栢栗寺金銅藥師如來立像	1	栢栗寺	경북 경주군
제99호	工藝品	慶州聖德王神鐘	1	國	경북 경주군
제100호	石造物	芬皇寺石塔	1	芬皇寺	경북 경주군
제101호	石造物	平壤城壁石刻	1	國	평남 평양부
제102호	石造物	慶州孝峴里三層石塔	1	國	경북 경주군
제103호	石造物	慶州皇南里孝子孫時揚旌閭碑	1	國	경북 경주군
제104호	石造物	望德寺址幢竿支柱	1	國	경북 경주군
제105호	石造物	慶州瞻星臺	1	國	경북 경주군
제106호	石造物	慶州西岳里龜趺	1	國	경북 경주군
제107호	彫刻	咸安大山里石佛	3	國	경남 함안군
제108호	石造物	斷俗寺址東六層石塔	1	國	경남 산청군
제109호	石造物	斷俗寺址西六層石塔	1	國	경남 산청군
제110호	石造物	通度寺國長生石標	1	國	경남 양산군
제111호	書蹟典籍	海印寺大藏經板	81258	海印寺	경남 합천군
제112호	石造物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	1	國	경남 창녕군
제113호	石造物	昌寧速亭里東三層石塔	1	國	경남 창녕군
제114호	彫刻	昌寧松峴洞石刻佛座像	1	國	경남 창녕군
제115호	木造建築物	淸平寺極樂殿	1	淸平寺	강원 춘천군
제116호	石造物	春川前坪里幢竿支柱	1	國	강원 춘천군
제117호	石造物	春川昭陽通七層石塔	1	國	강원 춘천군
제118호	石造物	楓川原石燈	1	國	강원 철원군
제119호	石造物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	1	國	강원 원주군
제120호	木造建築物	長安寺四聖殿	1	長安寺	강원 회양군
제121호	石造物	洪川希望里三層石塔	1	國	강원 홍천군
제122호	石造物	洪川希望里幢竿支柱	1	國	강원 홍천군
제123호	彫刻	寒松寺石佛像	1	國	강원 강릉군
제124호	石造物	江陵大昌里幢竿支柱	1	國	강원 강릉군
제125호	石造物	江陵水門里幢竿支柱	1	國	강원 강릉군
제126호	彫刻	神福寺址石佛座像	1	國	강원 강릉군
제127호	石造物	掘山寺址浮屠	1	國	강원 강릉군



指定番號	種類	名稱	員數	所有者	소재지
제128호	石造物	掘山寺址幢竿支柱	1	國	강원 강릉군
제129호	木造建築物	心源寺普光殿	1	心源寺	황해 황주군
제130호	木造建築物	成佛寺極樂殿	1	成佛寺	황해 황주군
제131호	木造建築物	成佛寺應眞殿	1	成佛寺	황해 황주군
제132호	石造物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	1	國	황해 해주군
제133호	石造物	海州百世淸風碑	1	國	황해 해주군
제134호	石造物	海州邑內石氷庫	1	學校貴	황해 해주군
제135호	石造物	海州陀羅尼石幢	1	國	황해 해주군
제136호	木造建築物	大同門	1	國	평남 평양부
제137호	木造建築物	浮碧樓	1	國	평남 평양부
제138호	木造建築物	普通門	1	國	평남 평양부
제139호	工藝品	平壤銅鐘	1	國	평남 평양부
제140호	石造物	神福寺址三層石塔	1	國	강원 강릉군
제141호	石造物	成川處仁里五層石塔	1	國	평남 성천군
제142호	石造物	成川慈福寺址五層石塔	1	國	평남 성천군
제143호	石造物	粘蟬縣碑	1	國	평남 용강군
제144호	彫刻	龍川旧邑內石佛立像	2	國	평북 용천군
제145호	彫刻	龍川旧邑內石獸	1	國	평북 용천군
제146호	石造物	黃草嶺新羅眞興王巡狩碑	1	國	함남 함주군
제147호	木造建築物	釋王寺應眞殿	1	釋王寺	함남 안변군
제148호	木造建築物	釋王寺護持門	1	釋王寺	함남 안변군
제149호	工藝品	塔山寺銅鐘	1	大興寺	전남 해남군
제150호	彫刻	道岬寺石製如來座像	1	道岬寺	전남 영암군
제151호	石造物	華嚴寺三層四獅石塔	1	華嚴寺	전남 구례군
제152호	書蹟典籍	松廣寺大般涅槃經疏	1	松廣寺	전남 순천군
제153호	工藝品	上院寺銅鐘	1	上院寺	강원 평창군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e Focus o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and Changes in the Listing of Cultural Properties-

Oh Chun-Young

National Museum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adagio@korea.kr

Abstract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investigated and institutionalized Korea's cultural properties for the purpose of governance. This process was conducted by Japanese officials and scholars, and systematized after making some changes. The Reservation Rule (1916) and the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in 1934 were actually the starting point for Korea's current cultural property policy.

In the view of lineup of 'committee' that consider all of cultural property and changing of 'cultural property list', this study discusses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implemented by Joseon's Government-General,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oseon's Government-General formed a committee (Preservation Society) to formulate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and had the policy implemented by appointing Governor officials who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the total number of officials of the institution. Although some Koreans were concerned about this, they had no influence on the matter.

Second, the cultural properties listed by Joseon's Government-General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lists. The compilation of the first list was led by Sekino Tadashi, who represented the grading system (1909~1916); while that of the second list (1917~1933) was led by Guroita Gatsumi, who represented listing (1917~1933). Guroita Gatsumi tried to erase Sekino Tadashi's list by formulating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and the list - a situation that was revealed in the system and the actual contents of the list. The third list was made as a list of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in 1934. This list also reflected the results of Sekino Tadashi investigation of the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at existing temples that had been excluded from the previous regulations (1934~1945). In this way, a basic framework for the listing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was established in 1934.

Keywords Joseon Government-General, Cultural property, Committee, Sekino Tadashi, Guroita Gatsumi

Received 2017. 12. 27 • Revised 2018. 01. 19 • Accepted 2018. 02. 20

